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73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위성곤・박지원・김윤덕

주철현ㆍ허 영ㆍ이춘석

문대림 • 박희승 • 김한규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 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활동비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활동비 지급)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u>수 있다.</u>